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8,641,743	23,932,087
일반회계	401,200,000	20,060,000
특별회계	72,612,000	3,630,600
공기업특별회계	60,024,000	3,001,200
상수도사업	17,840,000	892,000
하수도사업	42,184,000	2,109,200
기타특별회계	12,588,000	629,400
수질개선	1,069,322	53,466
의료급여기금운영	1,567,247	78,36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4,514	1,726
새마을소득사업	344,517	17,226
주택관리사업	356,833	17,842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1,150,487	57,524
기반시설부담금	240,683	12,034
치수사업	7,824,397	391,220
기금	4,829,743	241,487
자활기금	606,703	30,335
옥외광고정비기금	135,000	6,750
노인복지기금	529,000	26,450
식품진흥기금	106,040	5,302
재난관리기금	3,453,000	172,6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68,85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